

로테르담협약(PIC) 회의 참가결과
(제1차 당사국총회 및 제1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

2004. 10

환 경 정 책 실
화학물질안전과

1. 회의 개요

□ 회의 명칭

- 「특정유해화학물질및농약의국제교역시사전통보승인(PIC)절차에관한 로테르담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 및 제1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 기간 및 장소

- '04.9.18 제11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 11)
- '04.9.20~24, 당사국총회(COP1), 스위스 제네바(국제회의센터)

□ 참가자 :

- 협약당사국 등 135개국의 정부대표
- WHO 등 국제기구 및 NGO

□ 대표단 구성 :

- 수석대표 : 최혁 주 제네바 대사
- 우리부 : 진명호 사무관, 최경희 연구관
- 관련부처 : 주 제네바 대사관 김영재 1등서기관,
외교통상부 장원 외무관, 농진청 이재봉 연구사
식약청 민충식 연구사

□ 회의 내용

- 제1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 사메틸납 등 3개 물질에 대한 잠정협약대상물질(부속서Ⅲ) 등재
- 제1차 당사국총회 (COP-1)
 - PIC 권역의 구성 (7개권역)
 - 부속서 Ⅲ에 새로운 물질 등재 (14개물질)
 - 당사국, 부속기구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재정 규정 채택

- 화학물질 검토위원회 설립 (31개국)
- 세계관세기구(WCO)에 부속서 III 수목물질에 대한 표준화 체계 도입 권고
- 불이행 및 분쟁 해결
 - 의사규칙, 재정규칙, 분쟁조정절차, 협약의무 불이행시 제재절차 등 협약 이행에 필요한 규칙
- 상설 사무국의 위치 결정 (스위스·이탈리아의 공동 유치)

2. 대표단 활동

□ 수석대표 연설

- 고위급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수석대표인 주 제네바 대사가 향후 동 협약의 순조로운 목적 달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적 제도 정비 등 협약이행을 위한 그간 우리나라의 노력을 설명
 - 이행 메카니즘의 설립, 개도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의 필요성,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구축, 협약 당사국의 확대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
 - 우리나라는 앞으로 동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천명
 - Roch 총회 의장은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에 관한 노력 및 의지에 감사를 표명

□ 제1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참가

- 주 제네바 대사관 김영재 1등 서기관 및 국립환경연구원 최경희 연구관이 참석하여 백석면, parathion, tetraethyl lead, tetramethyl lead 등 4개 물질에 대해 잠정협약대상물질 등재에 찬성 입장 표명하였으나 백석면은 러시아등 일부국들의 반대로 등재 대상에서 제외

□ 제1차 당사국총회 및 지역그룹 회의 참가

- 금번 당사국총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인 화학물질검토위원회 (CRC) 구성을 위한 두차례의 contact group 회의 및 아태지역그룹 회의에 참가
 - 동 위원회의 전체 참가국 규모, 지역별 참여지분, 참가국의 결정에 각 국의 이해와 맞물려 난항을 거듭함
 - 전체 31개 위원국중 아·태지역에는 8개국(4개국은 2년,4개국은 4년)이 배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지역그룹회의에서의 논쟁결과 **4년 임기의 위원국 자격을 획득함**
- PIC 권역 구성을 위한 contact group 회의 참가
 - PIC 권역의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EU, 캐나다 등은 그간의 잠정 PIC 권역(7개의 FAO 권역)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었음을 강조하며 동 권역유지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모로코, 세네갈 등 일부 국가들이 UN권역(5개권역)을 주장함
 - 협약 제5조 제5항상의 목적(최종규제통보의 처리절차)을 위해서만 동 권역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7개의 PIC 권역으로 구분하기로 결정

3. 주요회의의 결과

□ 제11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 논의결과 parathion, tetraethyl lead, tetramethyl lead 등 3종류의 물질에 대해 PIC절차 대상물질 수록 승인 및 결정 지침서를 채택, 제1차 당사국총회에 부속서Ⅲ 추가물질로서 상정
- 석면(asbestos)의 한 종류인 백석면(chrysotile)에 대해 우리나라, EU 국가 등이 등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러시아,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이 인체영향의 자료부족 등을 제기하며 반대하여 등재 대상에서 제외

□ 제1차 당사국총회

○ PIC 권역의 구성

- 협약 제5조 5항상의 목적(최종규제통보의 처리절차)을 위해서만 동 권역을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전 세계를 총 7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부속서를 포함한 결정사항을 채택함
- 아시아 권역은 우리나라를 포함 총 26개국으로 구성

○ 부속서 Ⅲ 개정

- PIC 절차의 신규 적용 물질로 채택이 결정된 Binapacryl 등 14개 물질이 포함된 부속서 Ⅲ 개정안을 채택
 - 동 개정은 '05.2.1 발효될 예정이나, 기존 리스트로부터 Monocrotopos 및 parathion formulation의 삭제는 '06.1.1 발효 예정

○ 화학물질 검토위원회 설립

- UN의 지역그룹 구분을 적용하고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화학

물질검토위원회를 설립

- '05년2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검토위원회 개최

· 동 위원회 위원은 4년 임기로 1회 연임 가능

(첫번째 위원회 구성원 중 절반은 2년 임기)

* 우리나라는 4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선임

	(2)	(4)
African States (8)	Gabon, Ghana, Nigeria, South Africa	Libyan Arab Jamahiriya, Rwanda, senegal, United Republic of Tanzania
Asian and Pacific States (8)	Kyrgyzstan, Malaysia, Thailand, Samoa	Jordan, Oman, Republic of Korea, Syria
Eastern European States (3)	Hungary	Slovenia, Ukrain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5)	Brazil, Ecuador	Argentina, Jamaica, Uruguay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7)	France, Italy, Switzerland	Australia, Canada, Finland, Netherlands

○ 당사국, 부속기구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재정 규정 채택

- 비준국의 증가 및 자발적 기여금을 통해 각 국의 부담이 감소가 예상되어 사무국에서 이를 반영하여 분담률 표를 수정함 동시에 동 문제를 UN의 적절한 기관에 검토를 요청
- 우리나라의 분담률은 2.746%로 잠정 집계되었으나 분담률표 수정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기술지원 전략 마련

- 기존의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지역협력프로그램의 이용 및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정책 추진을 촉구

- FAO/UNEP 기구를 통한 지역활동을 지원하고 바젤협약 지역센터, 지역내 조정센터 등 지역기구, 국제기구 및 다자환경협약기구들이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적 지원시스템을 활성화

○ 협약 이행위원회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반회의 개최

- 제2차 당사국총회 개최 전에 협약 불이행 관련 절차 및 이행위원회 설치를 위한 실무작업반회의 개최 합의

○ 사무국 유치지 결정

- 9.24일 전체 당사국중 신임장을 제출한 62개국에 비밀 투표한 결과 스위스/이탈리아가 다수표를 획득, 협약 상설사무국을 공동으로 유치함

○ 제2차 당사국총회 개최

- '05년 10월 공동 사무국 유치지인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 기타 결정사항

-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규정에 관하여 중재재판 및 조정 절차 규정을 채택
- 세계 관세기구(WCO)와의 협조를 통한 HS 관세코드 도입
- 협약사무국의 WTO 무역환경위원회(CIE) 옵저버 참석 추진과 논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등 WTO와의 협력체계 구축

4. 향후 추진계획

□ 행적적·법적 이행사항

- 부속서 Ⅲ에 등재 결정된 물질에 대한 수입국 응답서 제출
 - 환경부, 산자부, 노동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 관련산업계의 의견 수렴 및 동 물질들에 대한 수출입 현황, 위해성 등 관련 정보의 파악을 통해 수입 여부를 결정하고 수입국 응답서(ICR)를 사무국에 제출
- 제1차 당사국 총회의 결정사항을 고시에 반영
 - 환경부 고시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에따른 화학물질의수출에관한규정”에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의 법적절차 수행

□ 협약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 화학물질검토위원회(CRC) 참여 준비
 - 우리나라는 화학물질검토위원회의 위원국으로서 PIC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문위원의 선임절차를 이행
 - CRC 위원으로 정부가 지정한 국내 전문가의 이력서 및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04.12.1까지 사무국에 통보
- 기술지원 등 협약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 CRC 위원국으로서 협약 당사국간 위해성 정보의 공유와 함께 그간 협약이행 및 잠정CRC 위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 관련 산업계에 대한 홍보

- 당사국총회 중점 논의 사항 및 부속서Ⅲ 등재물질에 대한 홍보
 - 협약대상물질의 수출입시 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 홍보공문, 협회지 기고 등을 이용하여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을 관련산업계에 적극 홍보